

의안번호	제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회)	

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
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 (인사혁신처 소관)
제출 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경력개방형 직위의 지원자격요건을 구체화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, 개방형 직위 임용자에 대한 소속 장관의 인사 자율성을 제고하고 적격자를 적시에 임용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선발 시 공고방식을 유연화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경력개방형 직위 지원자격요건 구체화 근거 마련(안 제3조제6항)

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경력개방형 직위의 지원자격요건을 구체화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

나. 개방형·공모 직위 선발 시 공고방식 유연화(안 제21조제5항)

개방형·공모 직위 선발 시 긴급한 인력충원이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선발시험 공고일의 기한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고, 공모 직위 선발시 공동공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고방식 유연화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10. 10. ~ 11. 2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

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6항 중 “기준에 관하여”를 “기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력 개방형 직위의 지원요건 등에 관하여”로 한다.

제21조제5항 중 “공고할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공동으로 공고할 수 있다”를 “공고하거나 제4항에 따라 공모 직위 선발시험을 공고할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공동으로 공고할 수 있고, 제2항부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선발시험 공고일의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개방형 직위의 지정) ① ~ ⑤ (생 략)	제3조(개방형 직위의 지정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⑥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의 지정 기준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의 설정 <u>기준에 관하여</u>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.	⑥ ----- ----- ----- ----- <u>기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력개방형 직위의 지원요건 등에 관하여</u> ----- -----.
제21조(시험의 공고) ① ~ ④ (생 략)	제21조(시험의 공고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⑤ 소속 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을 <u>공고할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공동으로 공고할 수 있다.</u>	⑤ ----- ----- --- <u>공고하거나 제4항에 따라 공모 직위 선발시험을 공고할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공동으로 공고할 수 있고, 제2항부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인력충원이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선발시험 공고일의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.</u>
⑥ (생 략)	⑥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	
연 락 처	(044) 201 - 8351